

※ 본 자료는 1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제3차 대책의 특징 및 핵심 전략

- (특징) 친환경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 - 가공 및 농자재 등을 포함하는 전후방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
 - 산지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체제는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까지 확대
 -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를 통해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모색
- (핵심전략)
 - ‘생산자를 잘 살게 하자’: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익성 유지
 - ‘소비자를 행복하게 하자’: 소비자의 가치(건강, 영양, 안전 등)의 증진
 - ‘자연을 건강하게 하자’: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

□ 주요 내용

1.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

1.1. 친환경농업 전문단지 확대

- 친환경지구 및 광역친환경단지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
 - 성과제고 및 효율적 단지 운영을 위한 지구(단지)의 사후관리 강화
- 지역밀착형 및 품목별 유기농 특화단지 구축(유기농 특구/생태마을 등)

1.2. 실선 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 지력 증진(유 살리기 확대)

- 토양개량제·유기질비료·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 및 토양유기물 함량 제고
- 토양 양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적합한 농자재 투입 체계 구축

1.3.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 확대

-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자원화 촉진
 - ※ 공동자원화시설(누계) : ('07) 5개소 → ('10) 56 → ('13) 88 → ('15) 120
 - ※ 자원화율(퇴·액비화율) : ('09) 85% → ('15) 90%
-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·액비 등 이용 확대

1.4. 친환경농업 실선 농가의 소득 보전

- 농자재 및 노력비의 투입 최소화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('15년까지 유기농산물 생산비 20% 절감)
- 친환경직불제의 확대 개편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 및 다원적 기능 제고 (무농약 이상 단가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검토)

2.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

2.1. 산지의 조직화·규모화 및 물류 효율화

- 조직화·규모화 된 거점 조직을 육성, 산지 유통 활성화 추구
 - 친환경농업지구/광역단지 및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(지역농협) 활용
- 친환경 전용 종합 물류(유통)센터 건립 확대

2.2. 다양한 유통 주체의 육성

-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및 사업대상 범위 확대
 - (기존) 생산자단체 → (개선)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식품업체 등까지 확대

○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해 **농협(산지의 거점 조직화)과 생협(소비자의 조직화)의 연계** 체제 구축

- 농협의 도농교류 활동과 생협의 소비자 교육·홍보 활동 제휴 등 추진

○ **친환경농산물 지역생산-지역소비(로컬푸드) 체제** 추진

- 農(농)·食(식)·環境(환경)·生活(생활)을 테마로 한 운동을 실천하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화 유도 (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)

2.3. 친환경농산물 교육·홍보·교류 강화

○ 도시민의 녹색식생활 교육 및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(농·소·정 협력체제 구축)

○ 합리적 소비를 위한 가격 및 주요 통계 정보 강화(산업 MAP 구축)

2.4. 해외 마케팅 구축 지원, '신 시장' 창출 유도

○ 친환경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

○ 수출 대상국의 식품 규격에 맞는 **해외유기농 인증 획득**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민·관 협력체제 구축 지원

3.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3.1.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

○ **인증업무**를 민간에 **완전 이양(13)**하고, 민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강화

-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위반 시 처벌기준 강화(특사경 제도 검토)

-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"ISO 가이드 65" 준용, 전문화 유도

○ 생산·유통 등 전 과정의 인증 관리 강화

- **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(OSP, Organic System Plan)** 제도 도입, 생산과정 관리 강화

- 재포장 유통업체·학교 급식업체·인터넷 판매업체 등 집중 관리

- 거래 인증서 사본 첨부 의무화 및 이력추적제 확대 추진

3.2.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정비

○ 국내 **유기농식품 인증제도 통합** 운영, 국제적 조화 추진

※ 유기농산물(친환경농업육성법)/유기가공식품(식품산업진흥법) 이원화

-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신규 설정

○ 유기농산물 外 어업(수산물), 가공식품 및 비식용가공품까지 포함하여 통합 관리 추진

-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을 전면 개정하여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 추진

3.3.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

○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**안전성 검사 강화**로 부적격 농산물 시장유입 차단 (안전성 조사 확대 및 분석 인프라 구축)

○ 향후, **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비 GAP 제도의 개선** 추진

4. 가공 및 농기계 산업 활성화 (전우방 연관산업)

4.1.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

○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로 친환경농산물의 **新 부가가치** 제고

- 친환경(유기) 가공식품의 사업화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파트너십 체제 구축

○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 다양화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가공 시설 설치('15년까지 100개소)

- 또한, 유관기관(중소기업청 등) 간 공동 추진과제 발굴 확대

○ 생산기반과 상품화-가공-마케팅을 결합하는 **'유기농식품 클러스터(가칭)** 조성 (지자체, 입주업체 출자 및 민간 펀드 등 활용)

4.2. 유기농자재 산업와 토대 마련

- 곤충 및 미생물 등의 생명자원 산업화를 통해 유기농자재를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
 - R&D 지원 확대 및 기술 산업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
- 저탄소 유기농자재 산업 육성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
 -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컨설팅 추진

4.3. 친환경 녹색 기술 및 업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

-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, 친환경(유기)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
- 녹색인증 제도와 연계, 유기농식품 산업의 민간투자 촉진
- 유망한 기업체 발굴, 소규모 IR 등 민간 투자 유치 활동 강화

5.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
5.1. 친환경(유기)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

- 국내 주요작물(식량, 과수, 특용 등) 및 축종에 대한 유기생산 기술 개발 지원 확대
 - ※ 작물 : ('09) 6작목 → ('15) 15작목, 축종 : ('09) 0종 → ('15) 6종
- 유기재배 적합 품종 육성을 위한 토종연구회, 개인육종가, 종자관리원 등 네트워크 구축 추진
 - 내충성·내병성 등의 유기종자 기반 구축 및 R&D 추진 확대
- 친환경(유기)농업의 공익성 및 환경보전기능 연구 개발 확대
- 가공기술 및 품질개선 등의 연구를 통해 고부가 유기가공식품 개발 확대 (유기식품 사업단 신설 검토)
- 「유기농 전문기술 보급 사업단」 설치 및 운영
 - ※ 기존의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활용, 시범사업 추진 검토

- 산·학·연 및 농업인 연계 유기농 실용화 네트워크 구축(작목단위 모델 농가 100개), 유기농 기술 개발 보급 체계 개선

5.2.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

- 교육 대상을 친환경(유기농)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확대,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
-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추진
- 전문가 인력 풀(名人) 운영, 기술 지원 및 종합 컨설팅 체계 구축

6.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

-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D/B를 구축, 지역별 농업환경상태 진단 및 정책 수단과 연계해 나갈 계획
-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-산출 관계를 토대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
 - ※ 농업환경자원 정보 D/B 구축(점) : ('10) 3,300 ⇒ ('15) 5,000
 - ※ 토양검정 분석수(점) : ('10) 48만점 ⇒ ('15) 75

※ 분야별 투융자 계획은 부록 참고

부록

<분야별 투융자 계획>

□ 투융자 규모

-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기간('11~'15)중의 총 국고 투융자 규모는 4조 4,607억 원으로 연평균 8.4% 증가
 - 계획기간 중의 연평균 투융자 규모는 8,921억 원('10 투융자 대비 10.3% 증가)이며, 연평균 증가 예산액은 549억 원임.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계
투융자액(억원)	8,091	7,239	8,241	9,483	9,661	9,983	44,607
비 율(%)	-	16.2	18.5	21.3	21.6	22.4	100

□ 분야별 비중 및 편성 방향

-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이 2조 6,178억 원(58.7%)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-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외 친환경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 투자 확대

분 야	총 국고 투융자 규모(억원, %)				비중(%)
	제2차(A)	제3차(B)	증감액(B-A)	증감율(B/A)	
생 산	14,678	26,178	11,500	78.3	58.7
유 통 · 소 비	1,965	4,607	2,642	134.5	10.3
안 전 · 품 질	802	1,670	868	108.2	3.7
가 공 · 농 자 재	-	725	725	순증	1.6
기 술 개 발	634	1,107	473	74.6	2.5
농 업 환 경	206	317	111	53.9	0.7
기 타	9,636	10,003	367	3.8	22.4
계	27,921	44,607	16,686	59.8	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**

※ 본 자료는 1월18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“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추진배경

- 농산물 유통은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이 중심이 되어, 전체 유통물량의 80% 이상 점유
 - 농협의 직거래 보다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.
 - 또한 지난해 가격이 급등하였을 당시 농가는 소득면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함.
 - ※ 산지유통인 출하 : 농가(1,000원/포기) → 도매시장 → 판매가(2,950) ⇨ 1,950
 - ※ 계통출해(농협) : 농가수취가(1,000원/포기) → 하나로마트(2,300) ⇨ 1,300(33% △)
- 이에 따라 산지유통인이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시장 친화적으로 유통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
 - ※ 지난해 10월 5일부터 유통구조 개선 T/F팀을 구성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

□ 주요내용

1. 농업 거래 물량 확대

- (추진 목표: 채소기준) ('10) 8%수준 → ('11) 15 → ('15) 50%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·단순화
- (추진 방안) 농가가 선호하는 계약방식을 도입·적용
 - 계약재배 대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
 - ※ 현행 대금지급: 30% 이내 선지급, 판매 후 정산하는 시스템

- 농협중심의 『영농작업단』 을 구성하여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
 - ※ '11년에는 전국단위의 15개팀(150여명)을 운영
- 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에서 다년(3년 이상) 단위로 변경
- 농가의 계약재배 이행을 향상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, 계약재배 필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

2. 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격 안정기능 보완

- (추진 목표) 농협의 품목조합으로 전환을 유도, 수급안정 기능 보완
- (추진 방안)
 - 정부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 참여 유도
 - ※ (현행) 매취방식만 매입 자금 지원 → (개선) 포전방식도 지원
 - 물류기기, 포장재비 지원도 개인에서 법인 중심으로 전환
 - ※ 정부자금 지원시 농가와 포전 계약물량을 사전에 제공 요구, 수급자료로 활용

3. 농업의 직거래 활성화

- (추진 목표) (현행) 10% 수준 → ('12) 15% → ('15) 20% 이상
- (추진 방안)
 - (도매기능 강화) 농협중앙회가 『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』 를 전국 4개 권역(수도권, 영남, 호남, 강원권)에 설립·운영하여 소비자 대량 구매처 (대형유통업체, 외식·급식업체, 김치가공업체 등)에 공급
 - ※ '11년부터 수도권(안성)에 도매물류센터 건설 추진
 - ※ 현행 농협중앙회 도매분사 조직을 도매판매조직으로 개편
 - (소매기능 강화)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소매상, 식당 등을 대상으로 『예약 공동구매 시스템』 을 도입하여 공급망 구축

4. 다양한 직거래 방식의 활성화

- (추진 목표) 유통단계 축소 (현행) 5~7단계 → (개선) 3~4단계
- (추진 방안)
 -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을 검색·구매 가능한 『통합 관문홈페이지』 구축
 - ※ 지역별, 품목별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검색한 후 선택·구매
 - 농수산물유통공사(aT)의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여 대량 구매처와 사전 예약제 운영을 통해 B2B 거래 확대
 - ※ 사이버거래소 B2B 확대 목표 : ('10) 1,750억원 → ('11) 2,500 → ('15) 10,000
 -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생협방식의 직거래 도입도 회원대상으로 확대
 -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-food 개념의 직거래 장터(현행 2곳 → 광역시 대상 8곳)

5.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 내실화

- (추진 목표)
 - 정부비축: (현행) 수요량의 3% (수입산 한정) → ('11년) 5%(국내산 포함)
 - 상품김치 소비 확대: (현행) 40% → ('15) 60
- (추진 방안)
 - 기상 시나리오별 시세 예측모형을 개발·활용, 관측주기 확대(월 1회 → 3회) 및 정보 제공 대상 확대(유통·가공업체 포함)
 - 국내산 양념류(고추, 마늘) 비축규모 확대 및 판매방식도 원물 공매방식에서 직판, 반가공 등으로 다양화
 -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신진 농산물 중심에서 연중 공급이 안정된 김치 등 가공 식품으로 유도하여 수급안정 도모
 - 관측과 연계하여 적정 재배면적의 10% 여유물량을 추가 확보,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(남을 경우 김치 등으로 가공)

-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대 운영 및 위기 대응 매뉴얼(3단계: 주의, 경계, 위기) 운영 추진

6. 도매시장 제도 개선

- (추진 목표) 유통기능 활성화 및 시장 참여자간 경쟁 촉진
 - 거래제도를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·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
 - ※ 경매제와 정가·수의매매제를 동등하게 규정
 - 『가격조정제』를 도입하여 경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 시에 1일 상승률을 제한하여 상승폭을 완화
 - 전자·견본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의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전자 거래 의무화 확대
 - 시장도매인제 활성화를 위해 전제조건인 대금정산조직의 설립 추진
 - 도매시장법인 등의 회계 감사 강화와 평가도 현행 전국단위에서 시장별·권역별로 강화

7. 공정거래 기반 구축

- (추진 목표) 산지-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기반 구축
- (추진 방안)
 - 산지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『농산물거래 고시』 신설을 추진(공정위 협조)
 - aT의 불공정거래 현지 조사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강화
 - 소비자 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평가·발표하여 공정거래 정착 유도

주간농업·농촌동향 2010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

※ 본 자료는 1월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“2010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조사 개요

- (조사대상) 931천개 모집단에서 추출한 27천개의 표본조사구 및 전수대상지
- (조사기간) 2010. 11. 15 ~ 11. 30 (16일간)
- (조사항목) 논밭별, 증감사유별(논밭전환, 개간, 간척, 건물건축, 공공시설, 유흥지 등) 면적

□ 주요 내용

- 2010년 한 해 동안의 경지면적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증가면적은 9.5천ha 이고, 감소면적은 31.0천ha로 **순 감소면적은 21.5천ha**
 - 경지면적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0.9% 줄어들고 있으며, 2010년의 경우 최근 10년 연평균 감소율보다 더 많이 감소
 - **경지면적이 감소된 사유**는 건물건축 8.4천ha, 공공시설 9.3천ha, 유흥지 10.1천ha, 기타 3.2천ha
 - ※ 경지면적이 증가된 사유는 개간 7.9천ha, 간척 0.4천ha, 기타 1.3천ha
- 논면적은 984천ha로 '09년보다 26천ha(2.6%) 감소한 반면, 밭면적은 731천ha로 '09년보다 5천ha(0.6%) 증가
 - **논은 감소한 반면 밭이 증가한** 이유는 논벼재배에서 과수 등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로 전환한데 기인

<연도별 경지면적 및 증감률>

단위 : 천ha, %

구분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
경지면적	1,876.1	1,862.6	1,846.0	1,835.6	1,824.0	1,800.5	1,781.6	1,758.8	1,736.8	1,715.3
증감면적	-12.7	-13.5	-16.6	-10.4	-11.6	-23.5	-18.9	-22.8	-22.0	-21.5
증 감 률	-0.7	-0.7	-0.9	-0.6	-0.6	-1.3	-1.0	-1.3	-1.3	-1.2

※ 증감면적 및 증감률은 전년대비임.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우유 수급안정 대책**

※ 본 자료는 1월 18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“우유 수급안정 대책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추진 배경

- 원유생산 감소로 '11년중 유제품원료유 공급부족 예상
 - '11년중 원유 생산량은 1,931천톤으로 전년 대비 6.8% 감소 전망
 - ※ 원유생산량/잉여량 : → 2,110/221('09) → 2,071/130('10p) → 1,931/△8('11p)
 - 잉여원유 감축을 위한 생산조절제, 사료값 인상에 따른 사양관리 부실, 구제역, 이상기후 등 여파로 원유생산성 저하 등이 원인
 - 원유의 74%를 차지하는 우유는 공급가능, 분유 등 유제품은 부족
 - 개학 후엔 학교우유급식이 많은 유업체의 애로 가장 예상
- 분유재고량이 1천여톤 수준으로 적정재고(5~6천톤)에 훨씬 미달, 분유 가격이 상승추세이고 수입량이 대폭 증가
 - ※ 분유 재고량 : 8,761톤('07) → 7,795('08) → 4,472('09) → 1,118('10p)
 - ※ 탈지분유 가격 : 5,899원/kg('07)→5,294('08)→5,409('09)→6,775('10.10월)
 - ※ 혼합분유 수입량 : 31,723톤('07년) → 26,042('08) → 25,939('09) → 32,970('10p)
- 낙농 1세대 은퇴, 후계농 부족, 타 축종 전환 등으로 농가 수, 젖소사육두수가 감소하여 수급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.
 - ※ 젖소두수 : ('05) 479천두 → ('09) 445 → ('10.9월) 429
 - ※ 농가수 : ('05) 8,923호 → ('09) 6,767 → ('10.9월) 6,417

⇒ 낙농정책 Paradigm 전환 : 잉여원유 감축 → 생산기반 유지

□ 수급안정 대책

○ 유업체 원료유 수요에 부응, 원유 생산기반 확대

-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(쿼터)의 5%를 한시적으로 2년간 증량
-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20% 회수제도 한시적으로 2년간 중단
 - ※ 협동조합, 일반유업체는 자체적으로 원유생산 확대를 위해 쿼터량 증량, 젓소입식자금 지원 등 기 조치

○ 유제품 시장접근물량 조기 수입('11년 1/4분기), 할당관세 도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

- 시장접근물량(톤) : 탈지분유 1,034, 전지분유 573, 연유 130, 버터 420
- 탈지·전지분유 할당관세 도입 추진
- EU·미국과의 FTA 타결시 TRQ(탈지·전지분유 6천톤) 적기 수입

○ 원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 추진

- 한-EU FTA 국회비준 후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추진(100억 원)
 - ※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: 국산유제품 원료유 공급을 위해 농가에게 가공원료유(정상가격의 70% 수준)를 생산토록 하고 유업체에게 국제분유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을 보조
- 젓소개량, 시설현대화, 낙농단지·젓소육성우전문목장 조성, 쿼터량 정산기간 개선(연간총량쿼터제), 후계인력 양성, 낙농경영우수사례 전파 등
 - ※ 연간총량쿼터제란? : 농가의 개별 원유생산쿼터량 계산방법을 현행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것을 연간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함.

※ '15일쿼터제'와 '연간총량쿼터제'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부록 참고

부록

< '15일쿼터제'와 '연간총량쿼터제'의 차이 >

- A농가의 쿼터량이 100kg/1일 일때 A농가가 원유를 1~15일동안 1,600kg을 생산하였고 16~30일동안 1,400kg을 생산하였을 경우,
 - 15일쿼터제를 적용하면 A농가의 1달간 정상유대물량은 2,900kg, 100kg은 초과원유대물량으로 정산
 - 연간쿼터제를 적용하면 A농가가 1달간 생산한 물량 3,000kg 전체를 정상유대물량으로 정산하며, 초과원유대물량은 없음.
 - ※ 쿼터내물량은 정상유대(850원/ℓ 수준)를, 쿼터초과물량은 초과 원유대(480원/ℓ 수준)를 지급

○ 연간총량쿼터제의 효과

- (첫째) 쿼터량을 초과한 원유가격은 정상유대의 절반이하로 떨어지므로 생산자는 가급적 쿼터량 이내로 생산량 조절
- (둘째) 젓소의 생리상 매일, 계절별로 원유생산량이 다르므로 쿼터의 정산기간이 길수록 농가는 쿼터량 이내로 원유생산량을 맞추기가 용이하여 간접적으로 원유를 증산하는 효과가 있음.